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 1 기: 2025년 02월 0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울회계법인

목차

I.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II. 재무제표 -----	4
재무상태표 -----	5
운영성과표 -----	7
주석 -----	9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의 2025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번길 14

한 울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신 성 섭



2026년 2월 2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사이에 법인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제 1 기

2025년 02월 05일 부터

2025년 12년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원장 서종균

본점소재지: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2층(웹스빌딩)

(전 화) 051-715-1790

재무상태표

제 1(당)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단위: 원)

과 목	제 1(당) 기	
자 산		
I. 유동자산		1,890,652,140
현금및현금성자산	1,361,422,100	
단기금융상품(주4)	500,000,000	
미수금	266,080	
미수수익	12,920,000	
부가세대급금	6,937,567	
선급비용	559,383	
선급금	8,000,000	
당기법인세자산	547,010	
II. 비유동자산		751,863,979
1. 투자자산		114,221,355
퇴직연금운용자산	114,221,355	
2. 유형자산(주5)		311,926,709
비품	274,738,049	
감가상각누계액	(49,666,882)	
시설장치	27,897,000	
감가상각누계액	(3,411,458)	
건설중인자산	62,370,000	
3. 무형자산(주6)		314,411,946
소프트웨어	310,399,015	
상각누계액	(16,987,069)	
건설중인자산	21,000,000	

과 목	제 1(당) 기	
4. 기타비유동자산		11,303,969
장기선급비용	1,303,969	
임차보증금	10,000,000	
자 산 총 계		2,642,516,119
부 채		
I. 유동부채		1,558,371,492
미지급금	120,567,216	
예수금	414,125	
선수수익	1,112,583	
선수금	1,046,112,494	
유급휴가부채	39,311,208	
종업원급여충당부채(주7)	237,843,276	
임대보증금	113,010,590	
II.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주8)	486,751,190	
퇴직연금운용자산(주8)	(486,751,190)	
부 채 총 계		1,558,371,492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주9)		500,000,000
기본재산	500,000,000	
II. 보통순자산(주9)		584,144,627
잉여금(주10)	584,144,627	
순 자 산 총 계		1,084,144,627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642,516,11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영성과표

제 1(당) 기 2025년 02월 0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단위: 원)

과 목	제 1(당) 기	
I. 사업수익		11,654,888,545
출연금수익(주14)	11,085,119,333	
보조금수익	8,640,000	
대행사업수익(주14)	291,577,574	
미정산반환금	(6,773,139)	
기부금수익	100,000,000	
임대관리수익	176,324,777	
II. 사업비용(주12)		11,202,382,900
(1) 사업수행비용	9,888,182,193	
목적사업비용	9,546,950,210	
대행사업비용	341,231,983	
(2) 일반관리비용	1,314,200,707	
급여	624,934,610	
퇴직급여	53,250,604	
복리후생비	91,645,836	
여비교통비	36,425,549	
통신비	9,154,210	
수도광열비	4,109,480	
세금과공과	145,480	
지급임차료	28,230,500	
업무추진비	21,707,090	
감가상각비	5,592,620	
무형자산상각비	3,295,626	

과 목	제 1(당) 기	
수선비	200,000	
보험료	305,370	
차량비	4,011,730	
교육훈련비	29,828,510	
도서인쇄비	21,961,800	
회의비	810,260	
소모품비	9,682,239	
지급수수료	84,260,735	
홍보비	46,410,250	
행사비	30,974,000	
외주용역비	125,660,000	
건물관리비	1,027,000	
기관경상전출금	71,404,608	
운영수당	9,172,600	
Ⅲ. 사업이익		452,505,645
Ⅳ. 사업외수익		131,964,228
이자수익	16,519,619	
퇴직연금운용수익	5,038,675	
자산수증이익	107,208,779	
잡이익	3,197,155	
Ⅴ. 사업외비용		325,246
잡손실	325,246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84,144,627
Ⅶ. 법인세비용(주11)		-
Ⅷ. 당기운영이익		584,144,62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당)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1. 일반현황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법인")은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9월 설립 승인 이후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2025년 2월에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의 본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웹스빌딩)이며, 현재 티움, 창업공간 100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창업투자 정책 기획 및 비전 수립 지원
-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 기획·평가 및 성과분석
-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검토,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정책 및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기술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확산
- 기술창업기업 발굴, 보육, 투자 등 전(全) 주기적 혁신성장 지원
- 기술창업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시설 관리·운영
- 펀드 조성 및 분석·관리
- 펀드 투자기업의 발굴, 후속투자·지원사업 연계 등 성장지원
- 기술창업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술창업투자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법인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므로 재무제표의 구성항목 중 순자산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됩니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출연기관의 대행사업 회계처리는 대행사업비 수취 시 수익, 집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의 유의적인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법인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법인은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용가에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 이후에 손상차손이 인식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비품	5년
시설장치	5년

(4) 무형자산

법인은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측정합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추정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상각액은 당해 무형자산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유급휴가부채

법인은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향후 유급으로 휴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유급휴가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매 보고기간일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매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내부성과평가 및 외부경영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외부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될 성과급 부채(관련 퇴직급여 포함)는 종업원급여총당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7)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으로, 수급요건을 갖춘 임직원이 퇴직시에 확정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운용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기본순자산

법인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기본순자산으로 분류하며, 이들 자산의 취득금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 수익 인식

법인의 수익은 출연금수익, 보조금수익, 기부금수익과 임대관리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수익 및 보조금수익은 기부금과 동일하게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지급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반납 예정이거나 미사용 잔액은 출연금수익이나 보조금수익이 아닌 관련 부채로 계상하고, 미사용 잔액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보조금수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수익이 아닌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물 출연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등의 수익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금융 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등 금융수익은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을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에 기부자가 제약을 가한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제약의 성격에 따라 적립금의 증가 또는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수익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한편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 및 처분손익 등이 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합니다.

(10) 대행사업수익과 대행사업비용

법인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대행사업 회계처리는 대행사업비 수취 시 수익, 집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며, 대행사업 관련 부대 수익·비용(이자수익·비용 등)을 모두 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에서 제외, 대행사업별로 예산 초과 집행액(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과 집행액에 대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에 한함)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익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 대행사업비 정산반납대상금액이 있으나 미반납된 경우, 정산환출 등 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잔액은 미지급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1) 사업비용

법인의 사업비용은 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직접 수행하는 목적사업비와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사업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② 일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은 법인을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12)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은 법인의 주된 고유목적사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익, 투자자산과 유·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 등이 포함됩니다.

(13) 법인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내역	당기말
단기금융상품	기본재산(*1)	500,000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출연받은 설립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기본재산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유형자산

당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기말
비품	-	274,738	-	(49,667)	225,071
시설장치	-	27,897	-	(3,411)	24,486
건설중인자산	-	62,370	-	-	62,370
합 계	-	365,005	-	(53,078)	311,927

6. 무형자산

당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	310,399	-	(16,987)	293,412
건설중인자산	-	21,000	-	-	21,000
합 계	-	331,399	-	(16,987)	314,412

7. 종업원급여충당부채

보고기간 중 종업원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기초금액	-
증가금액	237,843
지급금액	-
기말금액	237,843

법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될 경영평가 성과급 및 관련 퇴직급여 부담금을 종업원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채는 당기 경영평가 지표 달성 수준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추정하였으나, 향후 확정되는 외부 기관의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1) 보고기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
증가금액	190,272
지급금액	(189,040)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관	485,519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486,751
퇴직연금운용자산	600,973
퇴직급여충당부채(자산)	(114,222)

(2) 퇴직연금운용자산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부산은행에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
증가금액	299,455
지급금액	(189,040)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관	485,519
운용수익	5,039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600,973

(3)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공정가치 및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운용기관	자산종류	당기말
부산은행	정기예금 1년	550,120
	대기성자금(현금성자산)	50,852

9. 순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순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기본순자산	500,000
보통순자산	584,145
합 계	1,084,145

(2) 보고기간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지자체출연기본재산	
부산광역시	500,000

(3) 당기 중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기 초 금 액	-	-
부산시 출연	500,000	-
당기운영이익	-	584,145
기 말 금 액	500,000	584,145

(4)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취득원가	공정가치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500,000	500,000

10. 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의 당기 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처분예정일: 2026년 2월 26일	
I. 미처분잉여금		584,145
1.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2. 당기운영이익	584,145	
II.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
III. 잉여금처분액		-
IV.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584,145

11. 법인세비용

법인의 부동산임대업 및 이자소득 등 수익사업에서 당기 중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산출된 법인세부담액은 없습니다.

1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 중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1,703,407	1,133,007	7,051,768	9,888,182
일반관리비용	789,190	60,369	464,642	1,314,201
합 계	2,492,597	1,193,376	7,516,410	11,202,383

13. 제공받은 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법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38,793천원의 인허가보증과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4. 중요 거래내역

보고기간 중 단일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거래처명	거래내용	당기
부산광역시	출연금수익	11,085,119
	대행사업수익(창업공간 100)	170,893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운영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5년 02월 0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¹⁾

인원수 및 시간 ⁵⁾	감사 참여자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²⁾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 ³⁾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⁴⁾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⁶⁾		1	-	2	-	-	-	-	-	-	-	3	-
투입 시간 ⁷⁾	분·반기 검토	-	-	-	-	-	-	-	-	-	-	-	-
	감사	2	-	67	-	-	-	-	-	-	-	69	-
	합계	2	-	67	-	-	-	-	-	-	-	69	-

- 주: 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 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 ¹⁾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 ²⁾ : 2026. 1. 29. (1일) - 주요 내용: 사업의 이해, 위험평가 및 대응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		
현장감사 주요 내용 ³⁾	수행 시기 ²⁾	투입 인원 ⁴⁾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2026.1.29.~1.30 ,2.7 (3 일)	상 주 (1)명, 비상주 (1)명	회사의 이해, 주요 이슈 및 내부통제 파악, 입증감사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 ⁶⁾ (○), 채권채무조회 ⁶⁾ (-), 변호사조회 ⁶⁾ (-) 그 밖의 조회 ⁷⁾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 ⁸⁾	- 횟수: (1)회 - 수행 시기: 2026. 1. 29		
외부 전문가 활용	-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 로 적습니다.
-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 ¹⁾	일자	참석자 ²⁾	방식 ³⁾	주요 논의 내용
-	-	-	-	-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25년												전기 이월 분 (A)	차기 이월분 (D= A+B-C)
					증가(B)						감소(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별첨 참조																		

주: '국고' 는 국고보조금을, '지방' 은 지방보조금을 '자기' 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25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	-	-	-	-	-	-	-	-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14101	직위	이사	성명	김희태
연락처	051-811-1709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 별첨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 행 기 간	예산액	2025년												차기 이월분 (D=A+B-C)			
					증가(B)				감소(C)				전 기 이 월 분 (A)	국 고	지 방	자 기		국 고	지 방	자 기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 고	지 방	자 기	국 고	지 방	자 기	국 고	지 방								
부산 광역시	권역별 창업인프라 시설관리	창업거점공간 유리시아플랫폼 관리운영	~20 26. 12.	600,000,000	-	600,000,000	-	4,266	-	467,904,848	-	-	-	-	-	132,099,418				
부산 광역시	창업공간 100운영	임주기업 대상 수요맞춤형 컨설팅 등	~20 25. 12.	190,000,000	-	190,000,000	-	9,202	-	183,226,861	-	-	-	6,782,341	-	-				
부산 광역시	티움 운영	예비·초기창업 기업 대상 공간지원	~20 25. 12.	300,000,000	-	300,000,000	-	6,001	-	296,359,796	-	-	-	3,646,205	-	-				
부산 광역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지역 내 청년창업인 공간 지원	~20 26. 12.	920,000,000	-	920,000,000	-	46,566	-	58,671,700	-	-	-	-	-	861,374,866				
부산 광역시	FLY ASIA 2025 개최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0 25. 12.	1,400,000,000	-	1,400,000,000	-	42,974	-	1,397,869,922	-	-	-	2,173,052	-	-				
부산 광역시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	아시아 창업허브 구축	~20 25. 12.	300,000,000	-	300,000,000	-	14,692	-	294,110,462	-	-	-	5,904,230	-	-				
부산 광역시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창업기업 지원 등	~20 25. 12.	3,000,000,000	-	3,000,000,000	-	153,655	-	2,964,773,214	-	-	-	35,380,441	-	-				
부산 광역시	기술창업기업 투자지원	투자사 및 기술창업기업 공간지원,	~20 25. 12.	1,580,000,000	-	1,580,000,000	-	37,278	-	1,556,941,400	-	-	-	23,095,878	-	-				

부산 광역시	2025 부산대표 창업기업	펀드조성 등 1~7년 우수기술창업기 업 지원	~20 25. 12.	700,000,000	-	700,000,000	-	-	-	39,926	-	695,256,330	-	4,783,596	-
부산 광역시	2025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사업	ESG경영 우수창업기업 지원	~20 25. 12.	200,000,000	-	200,000,000	-	-	-	10,254	-	198,067,761	-	1,942,493	-

주: '국고' 는 국고보조금을, '지방' 은 지방보조금을 '자기' 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